

제300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정관 개정 보고

2021. 4.



서울시농수산물공사
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개정 보고

1. 개정 내용

- 비상임 이사 8인 → 7인, 당연직 이사 3명 → 2명으로 조정
 - 당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 감축

2. 개정 사유

-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 반영 필요
 - 해양수산부(지역 내 항만 개발·운영권), 국토교통부(지역 사업 초과이익 처리) 등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('21.1)
 - 「지방자치법」 32년 만에 전부 개정,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('20.12)
 - 지방공기업의 비상임 이사 중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
 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 기준」(V. 조직, 나. 인력배치기준)
 -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비상임이사의 1/3이하로 운영
 -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
- ※ 서울시 투자·출연 기관 비교

구 분	서울주택도시공사	서울교통공사	서울시설공단	서울에너지공사
당연직 이사 수 (전체 정원)	2명 (1,386명)	2명 (16,771명)	2명 (3,757명)	2명 (280명)

3. 참고 사항

- 제안 근거 : 1. 지방공기업법 제58조 (2021.1.21 일부개정)
2. 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 기준 (행정안전부, 2021.3.23 개정)
-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합의 필
- 절 차 : 서울시의회 보고 → 서울시장 인가 및 공포 시행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1항 본문 중 “8인”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“7인” 이내의 비상임 이사로 표기하고 당연직 이사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1호 중 당연직 “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업무 담당 국장 1명, 투자기관총괄관리업무 담당 주무국장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”은 “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업무 담당 국장 1명, 투자기관총괄관리업무 담당 주무국장 1명”로 한다.

부 칙(2021. 6.)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사규의 개정) 공사 사규(직제규정) 제7조 본문 중 “8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”를 “7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”로 표기하고 “당연직 이사 정원 3명”은 “당연직 이사 정원 2명”로 표기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<u>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3명 및 노동이사 2명 포함)</u>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</p> <p>②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업무 담당 국장 1명, 투자기관총괄관리업무 <u>담당 주무국장 1명</u> 및 <u>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0조(임원) ① ----- ----- <u>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2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담당 주무국장 1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